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2021. . .	
연월일	(제 회)	

고령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자	고령군수 (건축허과과)
제출연월일	2021. . .

법무통계담당 심사필

# 고령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일자 : 2021. 09.

제 출 자 : 고 령 군 수

## 1. 개정이유

개정된 경관법의 내용반영과 그동안 경관조례 운영상 불합리한 일부 미비점의 보완을 통해, 상황변화에 따른 규제를 완화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경관 조례와 개정된 법령의 법령 조항 정비(안 제2조 외)

- 경관법 및 타 법령의 개정으로 인해 경관조례와 타 법령상 불 일치한 조항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 나. 경관위원회의 겸임사항 추가 반영 (안 제22조)

- 경관위원의 구성 및 운영에서 경관위원회에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를 대신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 하고자 함.

### 다.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재정비(안 제30조)

- 상위법 개정으로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을 조례에 별도 반영 하고자 함.

### 라.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별도 신설(안 제30조의2)

- 상위법 개정으로 건축물의 심의 대상을 별도 신설함과 동시에 심의 대상

범위를 조정하여 규제를 완화하고자 함.

마. 경관심의의 생략기준 조항 정비(안 제32조)

- 현상공모에 의한 건축설계 작품으로서 별도의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건축물에 대해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3. 개정안 : 붙임

4. 신 · 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경관법」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다. 입법예고 기간 및 결과 :
- 라. 성별 영향평가 결과 :
- 마. 규제영향 분석 결과 :

## 고령군 조례 제 호

### 고령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령군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건축법」 제15조”를 “「건축법」 제20조”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제8조 및 제9조”를 “제11조 및 제14조”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법 제10조제1항”을 각각 “법 제11조제1항”으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3조제3호”를 “법 제9조제1항제11호”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3조제1항제6호”를 “법 제16조제1항제6호”로 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8조제7호”를 “영 제8조제1항제7호”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법 제14조”를 “법 제17조”로 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9조제3호”를 “영 제10조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법 제16조제1항”을 “법 제19조제1항”으로 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0조제3호”를 “영 제11조제3호”로 한다.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6조제5항제8호”를 “법 제19조제5항제8호”로 한다.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3조”를 “영 제16조”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법 제22조제1항”을 “법 제25조제1항”으로 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4조제5호”를 “영 제17조제5호”로 한다.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5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을 “법 제18조 제1항 및 제25조제1항”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영 제18조”를 “영 제25조”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위원회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고령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고령군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를 대신 할 수 있다.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 대상 및 규모) 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영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경관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회기반시설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법에 따른 도로로 총 사업비가 50억원 이상인 사업(보상비 제외)
2. 하천법에 따른 하천시설로 총 사업비가 50억원 이상인 사업(보상비 제외)
3. 야간경관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대상에 설치되는 경관 조명시설로 사업비가 1억원 이상인 사업.
  - 가. 지역의 상징적인 공공건축물 및 도시구조물(교량, 지하차도, 육교 등)

나. 국가, 도 및 군의 지정 문화재

다. 도시공원, 광장, 수변공간, 사적지 주변

라. 랜드마크적인 상징 조형물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조성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회기반시설 사업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법 제28조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과 같다.

1. 경관지구의 건축물(「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은 제외한다.)

2.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공건축물로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공공청사, 문화·집회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교육연구시설 등

나.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3.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4.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물로 10층 이상의 공동주택의 신축

5.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3조제2항 및 영 제16조제4항”을 “법 제29조제3항 및 영 제23조제1항”으로 한다.

제32조제2호 중 “「건축법 시행령」 제5조제6항”을 “「건축법 시행령」 제5조제1항”으로, “제5조 제5항”을 “제5조의5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현상공모에 의한 건축설계 작품으로서 별도의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건축물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4조제2항제6호”를 “법 제30조제2항제4호”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조례의 시행 전에 각종 인·허가 신청이 접수되었거나 진행중인 용역사업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생   략)</p> <p>2. “가설건축물”이라 함은 「<u>건축법</u>」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임시적 건축물을 말한다.</p> <p>3. ~ 5. (생   략)</p> <p>6. “일반건축물”이란 제5호의 공공건축물을 제외한 「<u>건축법</u>」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해 허가 또는 신고대상의 건축물을 말한다.</p> <p>7.·8. (생   략)</p> <p>제9조(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청회) ① 군수는 <u>법 제10조제1항</u>에 따른 공청회의 주재자 및 발표자를 다음 각 호의 자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p> <p>1. ~ 4. (생   략)</p> <p>② 군수는 <u>법 제10조제1항</u>의 규정에 따른 공청회를 개최 한 후 10일간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p>	<p>제2조(정의) ----- ----- -----.</p> <p>1. (현행과 같음)</p> <p>2. ----- 「<u>건축법</u>」 제20조----- -----.</p> <p>3. ~ 5. (현행과 같음)</p> <p>6. ----- ----- -<u>제11조 및 제14조</u>----- ----- -----.</p> <p>7.·8. (현행과 같음)</p> <p>제9조(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청회) ① ----- <u>법 제11조제1항</u>----- ----- -----.</p> <p>1. ~ 4. (현행과 같음)</p> <p>② ----- <u>법 제11조제1항</u>----- ----- -----.</p>

한다. 이 기간동안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자는 서면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③·④ (생략)

제10조(경관계획의 내용) 영 제3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 9. (생략)

제12조(경관사업의 대상 등) 법 제13조제1항제6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 14. (생략)

제13조(경관사업 사업계획서) 영 제8조제7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 5. (생략)

제14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구성) ①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추진협의체”라 한다.)의 구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중에

-----  
-----  
-----.

③·④ (현행과 같음)

제10조(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항제11호-----  
-----  
-----.

1. ~ 9. (현행과 같음)

제12조(경관사업의 대상 등) 법 제16조제1항제6호-----  
-----  
-----.

1. ~ 14. (현행과 같음)

제13조(경관사업 사업계획서) 영 제8조제1항제7호-----  
-----  
-----.

1. ~ 5. (현행과 같음)

제14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구성) ① 법 제17조-----  
-----  
-----  
-----

② ~ ⑨ (생략)

제15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9조제3호에서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생략)
2.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6조(경관협정의 내용) 경관협

정의 내용에 있어 영 제10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 8. (생략)

제17조(경관협정서의 작성) 법 제

16조제5항제8호에서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 4. (생략)

제18조(경관협정의 승계자) 영 제

13조에 따른 경관협정 체결자로서의 지위를 승계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 3. (생략)

② ~ ⑨ (현행과 같음)

제15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10조제3호-----  
-----  
-----.

1. (현행과 같음)
2. 법 제19조제1항-----  
-----  
-----

제16조(경관협정의 내용) -----

----- 영 제11조제3호-----  
-----  
-----.

1. ~ 8. (현행과 같음)

제17조(경관협정서의 작성) 법 제

19조제5항제8호-----  
-----  
-----.

1. ~ 4. (현행과 같음)

제18조(경관협정의 승계자) 영 제

16조-----  
-----  
-----.

1. ~ 3. (현행과 같음)

제19조(경관협정에 관한 조정·권고) ① 군수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경관협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경관협정의 범위 및 내용을 조정·권고를 할 수 있다.

② (생략)

제20조(경관협정 지원대상 사업계획서) 영 제14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같다.

1. ~ 6. (생략)

제21조(경관사업 및 경관협정에 대한 재정적 지원) 군수는 법 제15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 3. (생략)

제22조(경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경관과 관련된 사항의 심의 및 자문을 받기 위하여 고령군경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은 영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임명

제19조(경관협정에 관한 조정·권고) ① ----- 법 제25조제1항-----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경관협정 지원대상 사업계획서) 영 제17조제5호-----

1. ~ 6. (현행과 같음)

제21조(경관사업 및 경관협정에 대한 재정적 지원) ----- 법 제18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

1. ~ 3. (현행과 같음)

제22조(경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 영 제25조-----

하거나 위촉한다.

② ~ ⑥ (생략)

<신설>

제30조(위원회의 심의대상) 영 제

17조제3호의 규정에 의거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항  
“이란 경관에 관한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관리구역안의 건축물의  
건축

2.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  
화재보호구역 경계로부터 500  
미터 이내 건축물의

건축 (단, 가설건축물은 제외  
한다)

3. 20세대이하로서 3층 이상 공  
동주택 건축물의 건축

4. 3층 이상이거나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  
축물의 건축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

② ~ ⑥ (현행과 같음)

⑦ 위원회는 「공공디자인의 진  
흥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고  
령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고령군 공  
공디자인진흥위원회를 대신 할  
수 있다.

제30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 대상 및 규모) 법 제26조  
제1항제5호 및 영 제18조제1항  
제3호에 따라 경관심의를 거쳐  
야 하는 사회기반시설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법에 따른 도로로 총 사  
업비가 50억원 이상인 사업(보  
상비 제외)

2. 하천법에 따른 하천시설로  
총 사업비가 50억원 이상인 사  
업(보상비 제외)

3. 야간경관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대상에 설치되는  
경관 조명시설로 사업비가 1억  
원 이상인 사업.

가. 지역의 상징적인 공공건  
축물 및 도시구조물(교량, 지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준산업단지도 포함한다)

안 건축물의 건축 다만, 단지 전체적으로 색채계획에 대한 심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6. 3층 이상 또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공공 건축물의 건축

7. 별표 1의 디자인 메뉴얼 개발에 관한 사항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단, 폭 10미터이하 도시계획도로의 경우는 제외한다.

9. 제41조의 규정 의한 역사적 건조물의 지정 및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수림 등의 지정

10.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및 「고령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구역 지정안의 옥외광고물의 신고·허가사항

하차도, 육교 등)

나. 국가, 도 및 군의 지정 문화재

다. 도시공원, 광장, 수변공간, 사적지 주변

라. 랜드 마크적인 상징 조형물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조성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회기반시설 사업

11. 광고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인 옥상 대형간판 및 전광판의 설치

12. 기타 군수가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 설>

제30조의2(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법 제28조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과 같다.

1. 경관지구의 건축물(「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은 제외한다.)

2.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공건축물로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공공청사, 문화·집회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교육연구시설 등

나.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3.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4.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물로 10층 이상의 공동주택의 신축

제31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3조제2항 및 영 제16조제4항과 관련 공동위원회로 구성할 수 있는 위원회와 심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략)

② (생략)

제32조(경관심의의 생략기준) 제30조 및 제31조 각 호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심의를 생략한다.

1. (생략)

2. 「건축법 시행령」 제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건축위원회가 심의한 사항과 「건축법시행령」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에 설치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

3. ~ 5. (생략)

<신설>

5.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제31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9조제3항 및 영 제23조제1항-----

1.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32조(경관심의의 생략기준) -----  
-----  
-----  
-----  
---

1. (현행과 같음)

2. 「건축법 시행령」 제5조제1항-----  
-----  
-----제5조의5제1항-----  
-----

3. ~ 5. (현행과 같음)

6. 현상공모에 의한 건축설계 작품으로서 별도의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건축물

제33조(위원회의 자문대상) 법 제 24조제2항제6호에서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 4. (생략)

제33조(위원회의 자문대상) 법 제 30조제2항제4호-----  
-----  
-----.  
1. ~ 4.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고령군 건축허가과	
연 락 처	(054) 950 - 6743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2021. . .	
연월일	(제 회)	

고령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자	고령군수 (건축허과과)
제출연월일	2021. . .

법무통계담당 심사필

# 고령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일자 : 2021. 09.

제 출 자 : 고 령 군 수

### 1. 개정이유

○ 상위법령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17379호, 2020. 6. 9.)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664호, 2021. 5. 4.)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군민의 권익보호 및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기간을 15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변경하고,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재심의 신청 기회 제공(안 제15조)
- 나. 옥외광고사업 등록자의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안 별표 7)
- 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규정 개정 및 내용 수정

### 3. 개정안 : 붙임

###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입법예고 기간 및 결과 :

라. 성별 영향평가 결과 :

마. 규제영향 분석 결과 :

고령군 조례 제 호

## 고령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령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군수가”를 “옥외광고 업무담당국장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15일[영 제32조제5항에 따른 소위원회(이하“소위원회”라 한다)는 10일]”을 “20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1회에 한정하여 15일(소위원회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를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로 한다.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7】

과태료 부과기준(제28조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비고
<p>1. 법 제3조를 위반하여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을 표시한 경우</p> <p>가. 입간판</p> <p>1) 도로(보도를 포함한다)에 설치한 경우</p> <p>가) 연면적 1㎡ 미만</p> <p>- 0.5㎡ 미만</p> <p>- 0.5㎡ 이상 0.8㎡ 미만</p> <p>- 0.8㎡ 이상 1㎡ 미만</p> <p>나) 연면적 1㎡ 이상 2㎡ 미만</p> <p>- 1㎡ 이상 1.3㎡ 미만</p> <p>- 1.3㎡ 이상 1.6㎡ 미만</p> <p>- 1.6㎡ 이상 2㎡ 미만</p> <p>다) 연면적 2㎡ 이상 3㎡ 미만</p> <p>- 2㎡ 이상 2.3㎡ 미만</p> <p>- 2.3㎡ 이상 2.6㎡ 미만</p> <p>- 2.6㎡ 이상 3.0㎡ 미만</p> <p>라) 연면적 3㎡ 이상</p>	<p>법 제20조 제1항제1호</p>	<p>12만원</p> <p>17만원</p> <p>25만원</p> <p>35만원</p> <p>42만원</p> <p>58만원</p> <p>67만원</p> <p>92만원</p> <p>117만원</p> <p>130만원+연면적 3㎡ 초과하는 면적의 0.5 ㎡당 1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p>	<p>8만원 이상 35만원 미만</p> <p>35만원 이상 65만원 미만</p> <p>65만원 이상 130만원 미만</p>

2) 그 밖의 지역·장소에 설치한 경우		
가) 연면적 1㎡ 미만		5만원 이상 15만원 미만
- 0.5㎡ 미만	7만원	
- 0.5㎡ 이상 0.8㎡ 미만	10만원	
- 0.8㎡ 이상 1㎡ 미만	13만원	
나) 연면적 1㎡ 이상 2㎡ 미만		15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 1㎡ 이상 1.3㎡ 미만	17만원	
- 1.3㎡ 이상 1.6㎡ 미만	25만원	
- 1.6㎡ 이상 2㎡ 미만	42만원	
다) 연면적 2㎡ 이상 3㎡ 미만		50만원 이상 80만원 미만
- 2㎡ 이상 2.3㎡ 미만	50만원	
- 2.3㎡ 이상 2.6㎡ 미만	58만원	
- 2.6㎡ 이상 3.0㎡ 미만	75만원	
라) 연면적 3㎡ 이상	80만원+연면적 3㎡ 초과하는 면적의 0.5㎡당 8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나. 현수막		
1) 현수막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가) 면적 3㎡ 미만		8만원 이상 15만원 미만
- 1㎡ 미만	8만원	
- 1㎡ 이상 2㎡ 미만	12만원	
- 2㎡ 이상 3㎡ 미만	13만원	
나) 면적 3㎡ 이상 5㎡ 미만		15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 3㎡ 이상 3.7㎡ 미만	17만원	
- 3.7㎡ 이상 4.4㎡ 이하	22만원	

- 4.5㎡ 이상 5㎡ 미만	25만원	
다) 면적 5㎡ 이상 10㎡ 미만		35만원 이상 80만원 미만
- 5㎡ 이상 6.0㎡ 이하	35만원	
- 6.1㎡ 이상 8.0㎡ 이하	50만원	
- 8.1㎡ 이상 10.0㎡ 미만	58만원	
라) 면적 10㎡ 이상	80만원+면적 10㎡ 초과하는 면적의 1㎡ 당 1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2) 1)을 설치하여 차량통행이나 일반인의 보행을 현저히 방해한 경우	해당 과태료의 2배까지 증가	
다. 벽보		장당 8천원 이상 5만원 이하
1) 일반 광고내용		
- 1장 이상 10장 이하	장당 17천원	
- 11장 이상 20장 이하	장당 22천원	
- 21장 이상	장당 33천원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1장 이상 10장 이하	장당 17천원	
- 11장 이상 20장 이하	장당 30천원	
- 21장 이상	장당 37천원	
라. 전단		장당 5천원 이상 5만원 이하
1) 일반 광고내용		
- 1장 이상 10장 이하	장당 8천원	

- 11장 이상 20장 이하		장당 13천원	
- 21장 이상		장당 17천원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1장 이상 10장 이하		장당 17천원	
- 11장 이상 20장 이하		장당 30천원	
- 21장 이상		장당 37천원	
2. 법 제10조의4에 따른 손해배상 책 임보	법 제20조제1		
험에 가입 하지 않은 경우	항제1의3		
가.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이하인		1만원에 1일째부터	
경우		계산하여 1일마다 3	(좌동)
		천원씩 더한 금액	
나.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초과 90일		10만원에 31일째부터	
이하인 경우		계산하여 1일마다 1	(좌동)
		만원을 더한 금액	
다.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90일 초과인		70만원에 91일째부터	
경우		계산하여 1일마다 2	(좌동)
		만원을 더한 금액	
3.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	법 제20조		
지 않은 경우	제1항제2호		
가. 30일 이상 90일 미만		50만원	
나. 90일 이상 180일 미만		83만원	
다. 180일 이상 1년 미만		167만원	
라. 1년 이상		333만원	
4. 법 제16조에 따른 광고물 실명제 표시를 하	법 제20조		
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	제1항제5호		
가. 연 1회 위반한 경우		80만원	
나. 연 2회 위반한 경우		200만원	

다. 연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500만원	
5.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 제2항		
가. 1회 위반한 경우		25만원	
나. 2회 연속 위반한 경우		45만원	
다. 3회 연속 위반한 경우		100만원	

비고: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

1. 과태료는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은 포함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3. 입체형·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퍼센트에 면수를 적용한다.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에 대한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 가.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1.5배를 적용한다.
  -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 다.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태료 산정금액에 전기 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최초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된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과태료 부과금액의 30%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6. 과태료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5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생략)</p> <p>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u>부군수가</u>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p> <p>1.·2. (생략)</p> <p>③ 심의위원회는 심의안건을 문서의 접수일 또는 사유 발생일 부터 <u>15일[영 제32조제5항에 따른 소위원회(이하“소위원회”라 한다)는 10일]</u>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u>1회에 한정하여 15일(소위원회는 10일)</u> 이내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④ ~ ⑧ (생략)</p>	<p>제15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옥외광고 업무담당 국장이</u> ----- ----- -----.</p> <p>1.·2. (현행과 같음)</p> <p>③ ----- ----- --- <u>20일</u> ----- ----- ----- ----- --- <u>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u> ----- -----.</p> <p>④ ~ ⑧ (현행과 같음)</p>

< 의안 소관 부서명 >

고령군 건축허가과	
연 락 처	(054) 950 - 6742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2021. . .	
연월일	(제 회)	

고령군 건축물관리 조례안

제출자	고령군수 (건축허가과)
제출연월일	2021. . .

법무통계담당 심사필

# 고령군 건축물관리 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일자 : 2021. .  
제 출 자 : 고 령 군 수

## 1. 제정이유

『건축물관리법』 시행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용가치를 유지·향상시키고 건축물을 안전하게 해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상위법(건축물관리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건축물 정기점검(안 제4조)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다중이용업소 중 해당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받도록 함.

### 나.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대상 (안 제6조)

- 점검비용에 따른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사용승인 후 30년이 지난 건축물 중 3층이하로서 5백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중 건축위원회(건축구조분야)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함.

### 다. 건축물 해체 신고(안 제9조)

- 합리적인 건축물 해체 신고 범위를 규정하여 안전하게 건축물 해체를 함으로서 귀중한 인명피해와 재산상의 손실을 방지하고자 함.

### 3. 내용 : 건축물관리 조례 제정(안)

고령군 조례 제 호

#### 고령군 건축물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건축물관리법」과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고령군(이하 “군”라 한다) 행정구역 내의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정기점검)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다중이용업소 중 해당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각 호 건축물을 말한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같은 조 제16호가목, 나목 및 라목에 따른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업, 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3.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목욕장업, 나무의 시설 및 설비를 갖춘 목욕장업
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5.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업
6. 고시원업[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
7. 「의료법」 제82조제4항에 따른 안마시술소

제5조(긴급점검)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기초침하, 좌굴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로써 「고령군 건축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고령군 건축위원회(건축구조분야)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의 대상) ① 「건축물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3층 이하로서 연면적 5백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중 고령군 건축위원회(건축구조분야) 또는 법 제18조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의한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대상 건축물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정비구역 내 건축물
3. 「주택법」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

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집합건축물

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설물

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석축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7조(안전진단의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지진·화재 등 재난 발생으로 인하여 구조안전 또는 화재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어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건축위원회(건축구조분야)의 자문결과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 관할 소방서의 점검결과 화재안전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어 안전진단 요청이 있을 경우

제8조(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 등) ① 영 제12조제4항에 따른 건축물관리 점검기관(이하 “점검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은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작성된 점검기관 명부에 등재된 기관 중에서 무작위 선정하여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검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

1. 업무정지나 휴업 기간 중에 있는 경우
2. 특별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지정을 거부한 경우
3. 건축사사무소를 폐업하거나 건축사 자격을 반납한 경우

4.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5. 제8조제3항제1호 각 목의 사유로 건축물관리점검 업무수행이 어려워 지정 제외를 요청한 기관
6. 건축물관리점검과 관련하여 법 제2조제3호의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 또는 수수한 기관

② 고령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은 제1항의 각 호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지정할 수 없을 경우 즉시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명부에 올라 있는 점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7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도지사에게 변경사항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축물관리점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 연기요청서

가. 질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한 경우

나. 국내외 장기 출장을 간 경우

다.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감리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이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다.

2. 건축물관리점검기관 개설사항에 변경이 생겼을 경우(변경사항 제출)

3. 「건축법」, 「건축사법」,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서 사본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해당 관리자,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및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지정을 통보 받은 관리자와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통보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건축물관리점검 업무 대가는 건축물관리점검지침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제9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건축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21호 중 가목, 마목, 바목에 해당되는 1층 이하이며, 1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의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내 건축물(다만 정비구역 외곽경계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된 건축물은 제외한다.)
4. 「건축법」 제83조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공작물(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5호, 제11호에 따른 옹벽 또는 담장, 발전설비를 제외한다.)

제10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①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은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감리자 명부에 등재된 자 중에서 무작위 선정하여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지정할 수 없다.

1. 업무정지나 휴업 기간 중에 있는 자
2. 특별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지정을 거부한 자

3. 건축사사무소를 폐업하거나 건축사 자격을 반납한 자
4.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5. 제3항 각 목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 업무수행이 어려워 지정 제외를 요청한 자
6.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 또는 수수한 자

② 군수는 제1항의 각 호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할 수 없을 경우 즉시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감리자를 7일 이내에 해당 관리자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④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명부에 올라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7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도지사에게 변경사항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연기요청서 제출

가. 질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한 경우

나. 국내외 장기 출장을 간 경우

다.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감리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2. 「건축법」, 「건축사법」,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서 사본

3.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에 변경이 생겼을 경우: 변경사항 제출

제11조(해체공사감리계약 및 지정 취소) ①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감리자 지정 통보서를 받은 관리자와 감리자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감리자의 귀책사유로 감리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 관리자는 허가권자에게 다시 감리자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감리자의 업무 계속에 관하여는 「건축사법」 제22조의2와 「건설기술 진흥법」 제3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 따른 감리자 교체대상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체공사감리자가 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 또는 수수하는 경우
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지정 연기요청서

• 어두운 란(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청인	성명 <span style="float: right; font-size: small;">(서명 또는 인)</span>	자격번호
	사무소명	신고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사무소주소	
사유 및 기간	[        ] 질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	
	[        ] 국내외 장기출장	
	[        ] 그 밖의 사유	
	년        월        일        ~        년        월        일	

「건축물관리 조례」 제8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지정 연기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령군수 귀하

첨부 서류

-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2호서식]

##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연기요청서

• 어두운 란(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자격번호	
	사무소명	신고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사무소주소		
사유 및 기간	[ ] 질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		
	[ ] 국내외 장기출장		
	[ ] 그 밖의 사유		
	년 월 일 ~ 년 월 일		

「건축물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연기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령군수 귀하

첨부 서류

-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 의안 소관 부서명 >

고령군 건축허가과	
연 락 처	(054) 950 - 6091